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563
----------	------

제출일자 : 2024. 9. 30.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2024. 12. 31.에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회동의)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논공읍 논공로 697-13	대지 : 993㎡, 건물 : 지상 3층(928.71㎡)	3명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근로자 상담 : 법률, 근로조건, 회계 상담 등
- 관내 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노동상담실 운영
- 근로자에 대한 각종 교양·교육 사업
-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
-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관장	사무장	직원	
인 원	3	1	1	1	

라. 위탁기간 : 2년(2025. 1. 1. ~ 2026.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 심의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9. : 계획 수립
- 2024. 9. :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의결
- 2024. 10. : 군의회 동의 및 의결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함으로 의결

※ 첨부자료 참조

아. 성과평가 결과 : 적정(평균 89.8점)

※ 첨부자료 참조

자. 향후일정

- 2024. 10. ~ 11.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024. 12. : 위·수탁 협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위탁운영)
-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의회동의),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위탁운영비 : 70,925천원
(인건비 : 69,396천원 / 경상사업비 : 1,529천원)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서 수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 기본 검토사항

대상 사무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위탁
민간 위탁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 ○ 노사문제해결 및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과 각종 노동상담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위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위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의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민간 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 03. 14. ~ ' 09. 03. 13. : 최초 위탁(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 1차 ~ 9차('07. ~ ' 24.) : 위탁 계약(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 위탁기간 : 2년(2025. 1. 1. ~ 2026. 12. 31.) ○ 위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상담 : 법률, 근로조건, 회계 상담 등 - 관내 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노동상담실 운영 - 근로자에 대한 각종 교양·교육 사업 -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 -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

<p>적 정 성 검 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목적인 근로자 복지증진 취지에 맞게 근로자 단체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직접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 운영 가능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 노사관계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 ○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의 직접 운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 경감 - 적절한 운영 예산편성으로 효율성 확보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노동상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설명, 산업재해, 최저임금, 남녀평등,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문지식 활용 - 의장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 - 부의장 및 국장 : 단위조합 대표자로서 노사관계 풍부한 경험이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상담소 운영, 근로자 교육 및 각종 화합 행사 등을 토대로 성과 검토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보조금 정산 서류 검토 및 연간 1회 자체 감사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p>기존 수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명 : 한국노총 대구본부 달성지역지부 ○ 수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 위탁운영비 : 70,925천원(2024년도 예산)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p>수탁기관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

<p>민 간 위 탁 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p>	<p>○ 이미 위탁하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위탁금 및 금년(금회)</p> <table border="1" data-bbox="379 353 1385 1126"> <thead> <tr> <th>연도별</th> <th>민간위탁금(천원)</th> <th>세부 산출내역(천원)</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66,500</td> <td>○인건비 : 64,740 - 관 장 : 3,000 - 사무장 : 35,660 - 직 원: 26,080 ○경상사업비 :1,760(공과금, 사무용품 등)</td> </tr> <tr> <td>2023년</td> <td>69,196</td> <td>○인건비 : 69,196 - 관 장 : 3,000 - 사무장 : 37,260 - 직 원: 27,296 ○경상사업비 :1,640(공과금, 사무용품 등)</td> </tr> <tr> <td>2024년</td> <td>70,925</td> <td>○인건비 : 69,396 - 관 장 : 3,600 - 사무장 : 38,156 - 직 원: 27,640 ○경상사업비 :1,529(공과금, 사무용품 등)</td> </tr> </tbody> </table>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천원)	2022년	66,500	○인건비 : 64,740 - 관 장 : 3,000 - 사무장 : 35,660 - 직 원: 26,080 ○경상사업비 :1,760(공과금, 사무용품 등)	2023년	69,196	○인건비 : 69,196 - 관 장 : 3,000 - 사무장 : 37,260 - 직 원: 27,296 ○경상사업비 :1,640(공과금, 사무용품 등)	2024년	70,925	○인건비 : 69,396 - 관 장 : 3,600 - 사무장 : 38,156 - 직 원: 27,640 ○경상사업비 :1,529(공과금, 사무용품 등)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천원)											
2022년	66,500	○인건비 : 64,740 - 관 장 : 3,000 - 사무장 : 35,660 - 직 원: 26,080 ○경상사업비 :1,760(공과금, 사무용품 등)											
2023년	69,196	○인건비 : 69,196 - 관 장 : 3,000 - 사무장 : 37,260 - 직 원: 27,296 ○경상사업비 :1,640(공과금, 사무용품 등)											
2024년	70,925	○인건비 : 69,396 - 관 장 : 3,600 - 사무장 : 38,156 - 직 원: 27,640 ○경상사업비 :1,529(공과금, 사무용품 등)											
<p>기대효과 및 향 후 계 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사문제해결 ○ 노사간 화합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노동활동 및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근로의식 함양 ○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라 달성지역의 노동상담소의 조정, 중재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 기업의 생산 및 고용 증대에 기여 ○ 근로자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복지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p>전 문 가 의 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함을 의결함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 설 명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3		
	시 설 규 모	대지 : 993㎡, 건물 : 지상 3층(928.71㎡)		
	시 설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준 공 일 자	2005. 5. 17.	개 원 일 자	2007. 3. 13.
	이 용 대 상	근로자	수 용 인 원	20명 정도
	보 유 장 비	사무용 책상, PC 등		
위 치 도				
지역여건	○ 달성1차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시설 이용 용이			
현장사진				

참 고

운영평가 심의의결 자료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적정 여부
심의요지	▶ 심의대상 시설 및 수탁기관 - 시 설 명 :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 수탁기관 :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의결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 결과 민간위탁(재위탁)이 적정 / 부적정함을 의결함.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24. 9. .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	정은주	
부위원장	표준식	
위원	이연숙	
위원	이진목	
위원	권희성	
위원	엄요한	

평 가 집 계 표

심사결과(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합계	평균						
53P	8P.8	92	91	90	92	94	80

위와 같이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4. 9. .

위원장

정은주

부위원장

표준식

위원

이연숙

위원

이진목

위원

권희성

위원

엄요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총계	“점수” 란에 산정점수 기재	100		
위탁운영 및 관리능력	소 계	20		
	○ 위탁운영자 자격요건 - 비영리단체 여부 등	10		
	○ 조직 및 기구 편제(관리인력 확보 등)	10		
사업수행능력 평가	소 계	70		
	○ 위탁운영의 필요성 - 운영단체의 비전 제시 등	15		
	○ 위탁운영자의 근로자복지 분야 전문성	20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15		
	○ 근로자복지관 운영의 성과	20		
사업운영 활성화 평가	소 계	10		
	○ 근로자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	10		

※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상 적정

2024. 9.

심사위원

성명

(서명)

달성군수 귀하